「청년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구미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청년창업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제28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2) 필요성 : 청년예비창업자 발굴·선발, 창업자금 지원, 교육·멘토링, 사업화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창업지원 경험과 전문인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탁 운영이 필요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년창업 지원사업 업무 전반

(1)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예비창업자 모집·선발 및 협약 체결·관리

(3) 창업자금 지급, 창업교육·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4) 사업화 지원, 후속 지원사업 연계 및 사업성과 관리 등

(5) 그 외 기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7. 1.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00백만원(도비 90 시비 210)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고
300	30	259.2	10.8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구미시 인구청년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26.9.22.)

4. 부서의견

○ 청년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창업교육·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등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2)「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제28조

(3)「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요구 ※ 예산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적정

※ 2026년 구미시 인구청년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예비창업가를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자금 지원, 교육·멘토링, 사업화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전문적인 창업지원 역량이 요구되며,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시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 간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정비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임.